

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(안)】

영 주 시

##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(안)

의 안	63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9. 7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제정이유

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교양·문화·교육 등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근로자 복지회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가. 회관은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경제, 사회, 교양 및 문화등 근로자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(안 제3조)

나. 회관은 근로자, 노동단체 및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

다. 회관사용료를 규정함 (안 제7조, 별표)

· 근로자 20,000원, 일반시민 : 40,000원

라. 사용료 면제 및 반환규정을 규정함 (안 제8조, 제9조)

마. 회관은 근로복지공단 기타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3조)

### 3. 제정조례(안) : 덧붙임

#### 4. 참고자료 : 덧붙임

가. 관련법령(발췌) 1부

나. 사용료 대비표 1부

다. 입법예고 결과 1부

##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제공을 위한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회관은 영주시 휴천동 1128-1번지에 둔다

제3조(업무)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
1.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등 편익시설 제공
2. 근로자의 경제·사회·교양·문화등 근로자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
3.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

제4조(이용자 범위)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

1.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
2.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
3.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

제5조(사용허가)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

②시장은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

제6조(허가의 취소 및 제한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, 사용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

1. 시설사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
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3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4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
5.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

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

1. 선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
2.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

제7조(사용료) 회관 사용료는 [별표]의 기준에 의한다

제8조(사용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
2. 관로자단체 또는 노·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·회의등 행사
3. 시민단체 등에서 행하는 국가적 목적에 부합하는 범 시민적인 행사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

1.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
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
3.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 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때

제10조(사용자의 권리)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

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

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설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 물품식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

제12조(양도·전대의 금지)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## 나하다

제13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(이하 “위탁사무”라 한다)하기 위하여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근로복지공단 기타 비영리법인·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기간,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,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, 기타 위탁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,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④ 수탁자는 사용료 수입을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

⑤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
제14조(위탁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

1.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  2.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  3.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료

구 분	이용기준	요 금	비 고
회의실(예식장)	1회 2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근로자 20,000원</li><li>○ 일반시민 40,000원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시간 초과마다</li><li>○ 근로자 5,000원</li><li>○ 일반시민 10,000원</li></ul>

## 관 련 법 령(발췌)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① ~ ②<생략>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

④<생략>

### 【지방재정법】

제109조(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) ①<생략>

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

### 【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】

제5조(근로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

제6조(근로복지시설의 위탁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기타 비영리법인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

제7조(이용료등)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

#### 【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】

제15조(근로복지시설 설치등의 지원) ①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

②<생략>

③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#### 【국유재산법】

제21조의2(국유재산의 위탁)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

③<생략>

## 타시 회의실(예식장) 사용료 대비표

(단위 : 원)

시군명	시설명	이용기준	사용료	비고
영주시	회의실(예식장)	1회 2시간	· 근로자 20,000 · 일 반 40,000	1시간초과 · 근로자 5,000 · 일 반 10,000
포항시	대강당(예식장)	1회 2시간	· 근로자 20,000 · 일 반 40,000	1시간초과 · 근로자 5,000 · 일 반 10,000
춘천시	대강당(예식장)	1회 2시간	· 근로자 20,000 · 일 반 40,000	1시간초과 · 근로자 10,000 · 일 반 20,000
군산시	회의실	1회 2시간	· 근로자 20,000 · 일 반 40,000	1시간초과 · 근로자 10,000 · 일 반 20,000

## 영주시 다른회관 사용료 대비표

(단위 : 원)

부서명	시설명	이용기준	사용료	비고
산림축산과	자연휴양림회의실	1회 1시간	10,000	
순흥문화유적권 관리사무소	충효교육관	1회 2시간	20,000	매시간 초과시 20%가산
여성복지회관	강당(예식장)	1회 2시간	10,000	매시간 초과시 20%가산

〃

## 입 법 예 고 결 과

- 조례명 :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(안)
- 예고일 : '99. 6. 10
- 예고기간 : '99. 6. 10 ~ 6. 30(20일간)
- 예고방법 : 시보 제179호('99. 6. 10)
- 공고번호 : 제186호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△